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0

제출년월일 : 1998. 9. 17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개정이유

행정절차법시행('98. 1. 1)에 따라 공중화장실 이용·관리위반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시 처분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○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시에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처분이유 제시, 처분전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개정함.

3. 관계법령

○ 행정절차법 제21조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 제2항 "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18조 (과태료부과 징수등)	제18조 (과태료부과 징수등)
① 생략	① 현행과 같음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	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③ 생략	③ 현행과 같음
④ 생략	④ 현행과 같음